##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성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193

발의연월일: 2025. 1. 2.

발 의 자: 박성훈·이종욱·이헌승

김성원 • 안상훈 • 김기웅

김도읍 • 임이자 • 김종양

이상휘 · 조배숙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,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2년 2월 제정되었음.

녹색건축(그린리모델링·제로에너지건축 등)의 확산을 통한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차원의 정책수립 및 감축시나리오 구축 등이 필수적이며, 정책 수립 이후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현장기반의 세부시행계획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.

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기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선 현장의 여건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(안 제35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##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 중 "업무는"을 "권한은"으로, "시·도지사"를 "소속기관의장이나 시·도지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제6조의2 각 호"를 "제6조의2제1항 각 호"로, "위하여"를 "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)	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)		
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	①		
관의 <u>업무는</u> 대통령령으로 정하	<u>권한은</u>		
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<u>시·도</u>	<u>소속기</u>		
<u>지사</u> 에게 위임할 수 있다.	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		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의2	② <u>제6조의2</u>		
<u>각 호</u> 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	제1항 각 호		
진하기 <u>위하여</u> 다음 각 호의 어	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		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	하는 바에 따라		
업을 위탁할 수 있다.			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	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		